

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및동 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(안)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37호)

'96. 2. 6.

총무재무위원회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5. 12. 29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5. 2. 3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2. 6
- 라. 위원회 개최 : 제49회 임시회(개회중)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회의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국장 이 상 하)

가. 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동복지위원의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가) 사회복지위원회

1) 기능 (안제 2조)

-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는 시행계획의 수립
-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)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포함 10인이내의 위원
-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함.
- 당연직 위원은 사회·가정복지 및 기획예산과장 3인이며, 위촉직 위원은 5인이내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
3) 임기(안 제4조)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, 보궐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인 공무원은 당해직위 재직기간임.

4) 기 타

- 간사 1인은 사회복지과 사회계장으로 함 (안 제7조)
-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 (안 제9조)

나) 동 복지위원

1) 직무 (안제 11조)

-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
- 사회복지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 보호의뢰, 이용알선등

2) 정원 (안 제12조)

- 생활보호대상자가 100세대 미만인 등은 2인을 두고
- 100세대 초과시에는 매 300세대초과시마다 1인씩 추가

3) 위촉절차(안제 13조)

- 지역실정에 밝고,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

4) 임기는 3년이며,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(안 제14조)

5) 기 타

-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전체회의 소집(안 제16조)
-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지급 가능 (안 제 17조)

다. 참고사항

가) 근거법규

- 1) 사회복지위원회 :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
- 2) 동 복지위원 :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

나) 예산조치

- 소요예산은 '96예산에 반영
- 소요예산 : 1,000천원
- 소요예산 내역
 - 사회복지위원회 수당 (일반운영비, 운영수당)
 - : 50,000원 × 5명 × 4회 = 1,000,000원

다) 관련법규 (생략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임충빈)

가. 검토내용

-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(洞)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임.

나. 검토결과

- 가)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"사회복지위원회"를 조직운영하고 복지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을 타당함.

나. 검토의견		
제 정 안	검 토 의 견	비 고
<p>제3조(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.</p> <p>③아래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1. 사회복지과장 2. 가정복지과장 3. 기획예산과장</p> <p>④위촉직 위원은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.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①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-----위촉-----</p> <p>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①----- 연임할 수 있으며-----</p> <p>②③을 ②로 하고 내용은 제정안과 같음</p>	<p>임명 →위촉</p>
<p>제6조(회의)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(회의)①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-----</p> <p>③-----개의-----</p>	<p>개최 →개의</p>
<p>제15조(의무)①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해당 복지위원의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복지위원의 해촉을 요구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의무)①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제2항-----</p>	<p>②→2</p>

제 출 안	검 토 의 견	비 고
제19조(활동실적 관리)①복지위원이 본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활동을 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	19조 (활동실적관리)①----- -----제11조의-----	(삭제) 본조례
②복지위원은 매분기 활동실적을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(제정안과 같음)	
③제②항에 의한 활동실적 보고서에는 상담일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	③제2항-----	②→2

다. 참고사항

- '96예산 :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수당 (일반운영비, 운영수당)
50,000원 × 6명 × 4회 = 1,200,000원

라. 관련법규 (생략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→법에의해 이미 제정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설치되지 않았으나 제2조에서와 같이 기능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 7법에 의한 일을 수행하게 되며 동복지위원의 직무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상담, 알선 하는등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게 됨.
- 아동위원회 설치 조례와 본 조례가 중복, 유사하지 않은가 →근본 목적이 다름.
- 안 제9조의 위원수당과 안 제17조의 수당의 차이는 →위원의 수당은 위원회 위촉직 5명에 대한 5만원 상당을 말하며 안 제17조의 동복지위원의 수당은 예산반영 되지 않았음.
- 복지위원의 수당 지급의 향후 계획은 →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뜻있는 인사로서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위촉, 운용하고자 함.
- 동복지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는 타 조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→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존치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봄
- 검토보고서는 6명, 조례안에는 5명으로 된것은 →위촉직 5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'96예산편성은 6명으로 되어 있음.

- 위원회 현황은 →사회복지과에 고용심의위원회등 5개위원회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- 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동보지원도 동장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모순이므로 동복지위원은 동장이 동장이 위촉하는 방안에 대하여 →시행령 제10조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음. 개인별이 아닌 동별로 지원하는 사례는 →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본조례에 의해 현재 지급할 계획도 예산도 없음.
- 법이나 제도는 형편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→균형을 도모하겠음.
- 동복지위원의 수는 적정한가 →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각동2명이고 양재1동만 4명으로 모두 38명이며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계획임.
- 시민국의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믿으며 청소년 선도위원회의 예산 지원은 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가 →연말연시 선도활동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곡동, 방배2동의 경우 지원예산이외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음.
- 시민국장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안 제1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대상자를 조사하여 생보자 대상으로 선정 및 책정하는 조사, 면담등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→ 생보자의 선정 및 책정은 기준에 의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음.
- 당연직 위원이 정해져 있는데 구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은 →이촉시 검토

2. 토론자 및 토론요지

- 전문위원의 검토안 대로 하되 안 제17조 (수당)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제17조로 수정하는 동의안 발의 — 제청 — 이의없이 가결
- 여러가지여건을 보아 조례를 만들것이 아니므로 심사보류 동의안 발의 →채청 — 재석 10명중 반대6, 찬성2, 기권2로 부결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2. 6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

나. 수정이유 : 임명을 위촉으로 하는등 자구 체계 정리와 안제17조 (수당)
의 삭제로 조문순서의 정리

다. 수정주요골자 : 수정안 참조

7. 수정가결 (만장일치)

8. 소정안의 요지 : 조례내용의 미비와 타 조례와의 관계등을 고려 충분히 심사
하기 위하여 보류제의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예산조치 : 위원수당 예산반영

나. 역석회의, 공청회등 : 없음

10. 체계자구 정리내용 : 수정안에 반영